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59호
----------	------

2018. 9. 10.

건명	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(자치행정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풀뿌리 민주주의 함양 및 실질적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협의체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산시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·지원을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신설

- 가.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24조~제25조)
 -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사항 명시

나.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(안 제26조)

-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회장, 간사 당연직 구성
- 임원 : 회장1명, 부회장 1명, 감사1명, 사무국장1명, 고문

다.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(안 제29조)

- 정기회의 : 격월로 1회 개최
- 임시회의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위원 1/3이상 요구

□ 검토의견

- 풀뿌리 민주주의 함양 및 실질적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협의체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산시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·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0호
----------	------

2018. 9. 10.

건명	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자치행정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양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논산시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 (제4조 - 후생복지사업)
 - 모범·친절·우수·효행 공무원 및 청경·공무직·기간제근로자·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·외 연수 지원

□ 검토의견

- ① 그 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맞춤형복지제도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,

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“모범·친절·우수·효행공무원 및 청정·공무직·기간제근로자·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·외 연수 지원” 으로 개정하여 공직자로서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1호
----------	------

2018. 9. 10.

건 명	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자치행정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」 개정 및 「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(공원등) 설치·관리 규칙」 제정으로 읍·면·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현재 위임된 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. (안 별표 3, 별표 4)
- 희망마을건설과 : 양수기 보관, 관리 및 대부
 - ※ 기존의 논산시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위임되지 않고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양수기관리운영업무에 대하여 읍·면·동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- 도시재생과 : 가로(보안)등 관리(보안등신설, 접수)
 - ※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(공원등) 설치·관리 규칙이 제정되면서

논산시 사무위임조례에 가로(보안)등 관리업무의 근거법령을 추가하고,

- ※ 논산시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가로(보안)등 관리업무(가. 공공요금 및 제세, 나. 보안등 신설 접수) 중 가.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를 삭제하여 논산시 도시재생과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 하고자 함.

□ 검토의견

- 「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」 개정 및 「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(공원등) 설치·관리 규칙」 제정으로 읍·면·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것으로 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